

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26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방역용품을 지원하여 방역취약계층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의 주체로 만들고, 방역 우수대응 기관·단체 등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방역을 유도하여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목적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(안 제1조)
- 나.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정함(안 제3조)
- 다. 방역용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라. 감염병 우수 대응 기관·단체 등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마. 지역의료기관과 상시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바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·제2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101백만원 확보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
- 라. 기타사항
 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 : 생략(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)
 - 3) 비용추계서 : 불임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3조(교육 및 홍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4조(방역용품 등 지원)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마스크, 손소독제,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우수대응 단체 등에 지원)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한 우수 기관·단체·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감염병병원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발적 방역 노력
2. 군의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 : 방역용품 등 구입비 비용발생

나. 관련조문 : 제4조(방역용품 등 지원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군비	101	20	20	20	20	181

3. 관련 의견

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함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0년 기준)

1. 마스크 구입비 : 11백만원
2. 손소독제 구입비 : 47백만원
3. 살균제 구입비 : 43백만원

작성자 : 보건소장 조춘화